

창업보육센터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창업보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가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부른다.

제3조(소재)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센터의 목적) 본 규정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 창업자들에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센터의 사업) 본 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기술 벤처 사업화 지원
2. 보육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마케팅, 시설 등 지원
3. 대학실험실 창업유도 및 양성
4.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5. 산학협동 연구성과의 창업화 지원
6. 창업 동아리 육성
7. 기타 센터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기구) 본 센터는 기술지원부, 경영지원부, 교육지원부, 종합상담실, 행정지원실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장) ①본 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 지휘 감독한다.

4-1-11~2 제4편 부속기관

제8조(부·실장 등) ①각 부와 실에 부장 및 실장 각 1인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②부장, 실장 및 연구위원은 각 부(실)의 목적에 맞는 세부사업을 수행한다.

③부장, 실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센터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담매니저 등 자체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전담매니저와 직원 등에게는 업무기여도 및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본 센터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조직)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처장, 총무처장, 연구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내외 창업관련 전문가 중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직원으로 한다.

제1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2. 센터의 주요사업 계획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
4. 센터 규정의 개·폐(안)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소집과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입주자 선정 및 지원관리

제14조(입주신청) 센터에 입주를 원하는 자는 센터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기술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심사 및 입주자선정) ①센터는 입주심사기준에 의거 입주자의 자격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심사위원 4인이상(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한 후 입주업체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창업지원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5.26.)

②심사위원은 입주심사시 사업성, 기술성, 인적구성 및 물적구조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입주심사에 관한 기준과 선정방법은 따로 정한다.

③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거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입주 신청일 현재까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14.02.27.)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인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다발업종 영위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선정된 입주자중 부득이한 사정 또는 입주승인취소 등으로 대체 입주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입주심사 평결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①입주예정자는 입주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입주예정자는 지정된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제17조(입주연기) ①입주계약자가 부득이 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입주계약자가 입주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입주연기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단, 입주 후 1

4-1-11~4 제4편 부속기관

개월이 경과하거나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3. 기타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입주기간) ①입주자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입주자는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입주기간 연장 희망원을 제출해야 한다.

③입주기간 연장 희망원을 제출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일 15일전까지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0조(보육부담금 등의 징수) ①센터는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육부담금을 할인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1. 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주보증금
2. 임대료 (개정 2014.02.27.)
3. 관리비
4. 기타 제경비

②재학생 또는 창업 휴학생이 입주했을 경우 보육부담금 중 임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02.27., 개정 2015.05.26.)

③본교 재학생 및 당해연도 졸업생을 인턴사원으로 입사시켰을 경우, 가천대학교 교원이나 직원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보육부담금 중 임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4.11.18.)

④ 가천대학교 소속 기업일 경우 보육부담금 중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신설 2014.11.18.)

③부담금은 직접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우편으로 수납하되, 부담금의 납부를 위한 수수료는 송금자가 환급할 경우의 수수료는 센터가 부담한다.

④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미체결 또는 입주계약의 해지 이외의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보육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기준은 따로 정한다.

⑥ (삭제 2014.02.27.)

제21조(성공부담금) ①센터는 입주자 또는 졸업자에게 성공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성공부담금의 부과시점과 그 징수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③입주자 또는 졸업자는 성공부담금 이외의 센터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자등록) 입주자는 입주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그 내용을 센터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중 기획 및 개발단계인 예비창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시설지원) ①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센터는 입주자의 추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지적재산권관리 및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원하여 개설된 지도 및 연수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25조(사후관리) 센터는 창업기업이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기술지도, 연수, 판매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 4 장 졸업 및 퇴거

제26조(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자영공장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7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보육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악취의 과다발생, 선량한 미풍양속의 저해, 보육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이나 본교의 교육 연구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개정 2014.11.18.)

4-1-11~6 제4편 부속기관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계약 체결 후 지정된 기간 내 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8. 입주자의 사업진행도 평가결과가 센터에서 정한 등급 이하일 경우
- ②센터장은 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해당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퇴거통보를 받은 입주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이의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재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사유가 센터의 운영목적과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재심을 생략할 수 있다.
- ⑤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퇴거희망원을 희망퇴거일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자동퇴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하거나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정산 처리할 수 있다.
- ⑥퇴거통보를 받은 입주자가 퇴거지정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센터의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입주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사업평가 및 변경

제28조(평가) ①입주자는 입주기간동안 매년 센터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진행도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와 센터가 개설하는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교육에 대한 입주자의 참여도 등을 평가한다.

제29조(지원 및 징계) ①제28조에 의한 평가가 우수한 입주자에게는 창업기금알선, 임대료 감면 및 입주기간 연장 등의 각종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는 시정요구, 경고 및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경영기술지도 및 연수에 2/3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 3. 제28조에 의한 평가에서 불량한 성적을 받은 경우
- ③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입주자에게는 경고,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입주자에게는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변경승인) ①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 1.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등)
 - 2. 센터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변경
 - 3. 법인으로의 전환
- ②제1항에서 정한 변경승인신청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 6 장 시설물 사용 및 안전관리

제31조(시설물사용) ①입주자는 교내의 시설물 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센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센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입주자는 목적물 내부의 칸막이 또는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자는 졸업 또는 퇴거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은 시설의 설치자 또는 변경자가 부담한다.

제33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고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물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당해 입주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4조(숙박제한) 센터내 숙박은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장업무 등으로 숙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1-11~8 제4편 부속기관

제35조(물품 반출입)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단,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득이 필요하여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화물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소음, 악취 및 미풍양속의 저해 등 본교의 교육연구활동을 저해하는 물품

②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물품을 반입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는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방재관리) 입주자는 센터의 방재관리에 관한 제규칙 및 센터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이행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소각행위를 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센터 또는 담당기관이 실시하는 방재관리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4. 기타 센터가 방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출입관리) ①센터 출입문의 열쇠는 입주자와 센터가 각 1개씩 보관한다.

②입주자가 열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센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센터에 신고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신규제작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④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없다. 단, 사업의 성격상 특별한 잠금장치가 필요하거나 열쇠를 복제해야 하는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아 설치 또는 복제할 수 있다.

제38조(목적물출입) 센터는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실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39조(신고의무) 입주자는 일정기간 창업보육실을 비울 경우에는 센터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입주자 책임으로 한다.

제40조(유해물 등의 취급) ①유해(위험)물을 저장 및 보관할 때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과 성분, 함유량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물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위험)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내에서는 재해 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유해(위험)물의 저장은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구조물 내에 저장하여야 하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았거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있는 자에 한하여 처리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④저장소 내의 유해(위험)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제41조(폐기물 처리) 작업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보험가입) 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3조(입주자 금지조항) 입주자는 교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기타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
4. 임의로 냉, 난방용 기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및 취사행위
5. 통념적 관상어 이외의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
6. 센터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7.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유흥행위
8. 기타 센터장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제반 금지 행위

제44조(공동공간 이용규칙) 입주자가 공동이용 공간을 사적으로 독점,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 7 장 재 정

제45조(재정) ①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지원기관의 지원금
2. 본 대학교 보조금

4-1-11~10 제4편 부속기관

3. 입주기업으로부터의 각종관리비 수입

4. 연구 및 기부금

5. 기타 수입

② 입주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기술(연구)개발비, 성공부담금 등은 본교 수입으로 한다.

제46조(예산 및 결산) ①센터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예산 및 결산보고는 총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년도는 가천대학교 회계년도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